

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

□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문영민 위원장님!

선배·동료 위원님 여러분!

김 용 석 의원입니다.

「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.

□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세입·세출결산서 등 결산보고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임명한 결산검사위원이 결산확인 및 재정집행의 적정여부 등의 재무관련 회계검사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보고하는 활동입니다.

□ 2015년부터 2018년까지 10명의 서울시 결산검사위원 중 여성은 매년 1명인 것으로 나타나 결산검사위원의 남성 편중 현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

□ 이에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

「양성평등기본법」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여 양성평등의 이념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□ 보다 자세한 사항은

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,
개정안의 취지를 잘 살피셔서 만장일치로
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